

의안번호	2209902
의 퇴 인	여기구 의원
회 답 일	2025. 7. 1.
추 계 번호	25B2374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돈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한돈 부산물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0억 3,500만원(연평균 10억 7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안 제6조)	450	450	450	450	450	2,250	450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안 제8조)	20	20	20	20	20	100	20
한돈 부산물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안 제18조)	537	537	537	537	537	2,685	537
합계	1,007	1,007	1,007	1,007	1,007	5,035	1,007

주: 1. 유사 실태조사 사례, 유사 위원회 운영 사례, 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사업 실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사업 실시 및 위원회 운영 방식·규모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 등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수립한 종합시책을 기초로 하여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돈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돈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축사 등이 운영되는 지역에 이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축사 운영자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 한돈산업이 육성·유지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육성 등의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식량안보와 관련한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 사육 두수, 생산량 및 소비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생산·사육·유통·소비 등에 관한 정보와 한돈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8조(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9조(연구·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효율적 생산 및 한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한돈 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보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10조(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함(제1항) 1. 한돈의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2. 한돈의 가축질병 예방 및 위생에 대한 교육 3. 한돈의 탄소중립 등 환경개선에 대한 교육 4. 한돈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5. 그밖에 한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를 위한 전문교육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양성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8	안 제11조(수입안정보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돈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한돈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하는 한돈 수입안정보험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12조(후계 및 청년 한돈인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및 일정소득 이하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이하 “후계한돈인”이라 한다)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청년한돈인”이라 한다)에게 생활 및 가축사육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게 한돈산업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정착자금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한돈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축산계열학교·축산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한돈산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업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한돈산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 대하여는 국·공유지 임대, 축사시설 구입 및 신축·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 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특례 보증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년 한돈인이 한돈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6항)	
10	안 제13조(한돈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1. 축사 관련 시설·기자재 등 관련 시설 설치 사업 2. 스마트 축사 신축·개보수 등 축사시설 현대화 관련 사업 3. 한돈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에 필요한 경영안정 사업 4. 한돈가격 및 수급불안 요인 발생 시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안정 사업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돈농가의 소득증대와 한돈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농가의 경영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득세 감면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11	안 제14조(한돈수급조절협의회)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16조(시장 격리 및 비축사 업 등)	국가는 한돈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한돈을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음(제1항) 국가는 한돈의 가격이 제1항의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기간 자기부담으로 한돈을 비축할 시 그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4	안 제17조(도축 · 출하 장려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농가가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육한 한돈을 도축 또는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5	안 제18조(한돈 부산물의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생산·가공 및 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하 “한돈부산물”이라 한다)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16	안 제19조(사료 가격안정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에 따른 급격한 사료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여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기는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고, 기금의 재원 및 분담 비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재량/의무 규정
17	안 제20조(사료 작물 재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곡물 자급을 확보 및 한돈농가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8	안 제21조(한돈 의 품질 및 유통 구조 개선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한돈 개량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음(제1항) 1. 한돈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돈 품질고급화 추진 및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3. 한돈 유통구조 개선 및 다양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9	안 제22조(도축·가공시설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품질제고와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도축장의 현대화 및 도축·가공시설의 개선·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 품질고급화 향상에 필요한 도축·가공시설 등에 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0	안 제23조(한돈 소비촉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비선택부위 판매촉진 및 소비자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한돈 소비촉진 추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1	안 제24조(축산 환경 개선 실천 및 지원 등)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는 한돈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개선 경영실천, 탄소중립 실천, 축산악취 및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의 탄소저감 실천을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사 환경 개선에 필요한 스마트 축사 및 정보통신기술 장비 개발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의 축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22	안 제25조(가축 질병예방 실천 및 지원 등)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는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자율적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자율적 사전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3	안 제26조(국제 협력의 촉진 및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정보·인력 교류, 대외 홍보, 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개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국제협력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한돈산업의 발전 및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축산법」 제3조1)에 따라 한돈을 포함한 다양한 축종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추가재정소요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6조(실태조사)	○	• 유사사례 참고
4	안 제7조(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축산물품질관리 내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사업예산: ('25) 1,148백만원 · 시행주체: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업내용: 축산업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하자보수) 및 데이터 개방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5	안 제8조(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	• 유사사례 참고
6	안 제9조(연구·기술개발)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2025 축산현안 대응 산업화 기술 개발(R&D) 사업 내 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 사업 실시 중 · 사업예산: ('25) 432백만원 · 시행주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내용: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
7	안 제10조(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1130-331) 사업 내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실시 중 · 사업예산: ('25) 2,711백만원 · 시행주체: 농협경제지주 · 사업내용: 가축사육업, 축산차량 운전자 등의 교육 지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1조(수입안정보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한돈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보상하는 한돈 수입안정보험을 실시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기준가격 및 보상 범위, 보험료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함
9	안 제12조(후계 및 청년 한돈인 육성·지원)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현행 사업 실시 중 ①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청년후계농교육): ('25) 3,920백만원(보조) · 시행주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사업내용: 청년농업인 육성 확대에 따른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등 ② 농업자금이차보전(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25) 87,143백만원(이차보전) · 시행주체: 농업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 · 사업내용: 후계농업인의 영농 기반시설 설치자금 지원
10	안 제13조(한돈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제1항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현행 사업 실시 중 ① 축사시설현대화(보조/융자)(축사시설 개선 내 시설현대화): ('25) 67,946백만원(융자) · 시행주체: 지자체 · 사업내용: 축사 신축, 개보수 및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② 농업자금이차보전(축사시설현대화): ('25) 11,070백만원(이차보전) · 시행주체: 농업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 · 사업내용: 축사의 신축, 개보수, 자동화 시설 등 지원 ③ 농업자금이차보전(축산경영종합자금): ('25) 7,822백만원(이차보전) · 시행주체: 농업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 · 사업내용: 브랜드경영체 운영자금 및 브랜드 판매시설, 계열화사업 자금 지원 ④ 농업자금이차보전(농축산경영자금): ('25) 21,200백만원(이차보전) · 시행주체: 농업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 · 사업내용: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를 농가당 1천만원 이내 지원 * 사업비 중 축산분야 일부 해당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⑤ 축사시설현대화(보조/용자)(ICT 융복합 시설 지원): ('25) 49,721백만원(보조, 용자) · 시행주체: 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내용: 축산농가 ICT 장비지원
	안 제13조(한돈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제2항 중 사료구매자금 지원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현행 사업 실시 중 ① 농업자금이차보전(특별사료구매자금): ('25) 34,163백만원(이차보전) · 시행주체: 지자체 등 · 사업내용: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용자 ② 농업자금이차보전(사료구매자금): ('25) 31,335백만원(이차보전) · 시행주체: 지자체 등 · 사업내용: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용자 ③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농가사료구매자금): ('25) 300,000백만원(용자) · 시행주체: 지자체 등 · 사업내용: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저리 지원
	안 제13조(한돈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제2항 중 소득세 감면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 한돈농가의 경영비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 감면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1	안 제14조(한돈수급조절협의회)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에서 수행 가능 · 시행주체: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업내용: 축산물 수급 등에 대한 학계 및 관계자 자문 등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예산은 2022년까지 60백만원, 2025년은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수행중
12	안 제16조(시장격리 및 비축사업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 한돈가격 하락에 따른 한돈매입 및 시장격리 비용(제1항), 한돈비축 비용 지원규모(제2항)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4	안 제17조(도축·출하 장려금)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한돈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도축 및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될 한돈 두수, 지원 단가, 지원율 등 비용추계에 필요한 변수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최근 한우(암소) 및 돼지에 대한 도축수수료 및 출하장려금 지급 사례는 [참고자료 2] 주요 축종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사례 참고 ※ 최근 3년(2022~2024년)간 한우, 돼지, 닭의 평균 도축수수료는 [참고자료 3] 주요 축종별 도축수수료 현황 참고 ※ 추석 성수기 등 일정 요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산한 돼지 도축·출하장려금 예시는 [참고자료 4] 농림축산식품부 돼지 도축·출하장려금 비용추계 예시 참고
15	안 제18조(한돈 부산물의 활용)	○	• 한돈부산물 연구개발 비용(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사례 참고
		-	• 미대상(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현행 사업 실시 중 ① 농업자금이차보전(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25) 5,783백만원(이차보전) · 시행주체: 농업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 · 사업내용: 도축가공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16	안 제19조(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설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총 규모 및 이 중 정부 출연금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7	안 제20조(사료작물 재배 지원)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현행 사업 실시 중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보조/융자)(생산구축비):('25) 1,000백만원(보조) · 시행주체: 농협 및 축산단체 · 사업내용: 조사료를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 100km 이상 유통시 비용 지원 ② 공익기능증진직불(전락작물직불(* 종전 논활용직불)):('25) 244,000백만원(보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동계) 조사료·밀-(하계) 가루쌀·콩으로 이모작: 26,000백만원(=26천ha x 100만원/ha) · (동계) 밀: 31,000백만원(=31천ha x 100만원/ha) · (동계) 식량작물: 11,000백만원(=22천ha x 50만원/ha) · (동계) 조사료: 31,000백만원(=62천ha x 50만원/ha) · (하계) 콩: 56,000백만원(=28천ha x 200만원/ha) · (하계) 가루쌀: 32,000백만원(=16천ha x 200만원/ha) · (하계) 조사료: 50,000백만원(=10천ha x 500만원/ha) · (하계) 옥수수: 40,000백만원(=4천ha x 100만원/ha) · (하계) 깨: 30,000백만원(=3천ha x 100만원/ha) · 시행주체: 지자체 · 사업내용: 논을 활용한 작부체계(동계-하계)에 따라 지급단가를 차별화하여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직불금 지급
18	안 제21조(한돈의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 한돈 품질고급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 규모 및 한돈농가, 한돈산업관계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 규모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9	안 제22조(도축·가공 시설 지원 등) 제1항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현행 사업 실시 중 ① 농업자금이차보전(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25) 5,783백만원(이차보전) · 시행주체: 농업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 · 사업내용: 도축가공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안 제22조(도축·가공 시설 지원 등) 제2항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 도축·가공시설 등에 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사업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20	안 제23조(한돈 소비 촉진 지원)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현행 사업 실시 중 ① 축산자조금: ('25) 11,852백만원(보조) · 한돈자조금에서 수행중인 광고·홍보 사업비(11,387백만원) · 한돈자조금 소비자 정보제공 사업비(465백만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1	안 제24조(축산환경 개선 실천 및 지원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현행 사업 실시 중 ① 가축분뇨처리지원(보조/융자): ('25) 72,295백만원(보조 및 융자) · 보조 38,371백만원 + 융자 33,924백만원 · 사업내용: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등 ② 2050 축산현안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R&D)(축산시설·환경개선): ('25) 3,330백만원(출연) · 시행주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내용: 시설자재 국산화 및 맞춤형 자재 개발 등 축산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분야'는 안 제9조(연구·기술개발) 관련 사업비에 포함
22	안 제25조(가축질병예방 실천 및 지원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현행 사업 실시 중 ① 가축방역대응지원(소독자원 지원): ('25) 6,395백만원(보조) · 시행주체: 농협경제지주 · 사업내용: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보유 소독자원 임차지원 ② 가축방역대응지원(방역장비 등 지원): ('25) 6,679백만원(보조) · 시행주체: 지자체 · 사업내용: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방역장비 등의 구입 비용 지원 ③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 ('25) 1,425백만원(보조) · 시행주체: 지자체 · 사업내용: 가축전염병 전파 매개체에 대한 예찰·감시 및 방제 강화
23	안 제26조(국제협력의 촉진 및 지원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현행 사업 실시 중 ① 농식품해외시장진출: ('25) 51,289백만원(보조) · 시행주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내용: 수출국 현지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판로 개척, 해외시장 정보 조사, 현지 마케팅 등 지원 * 한돈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 수출품목 전반을 대상 ② 농식품시장개척: ('25) 4,804백만원(보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 시행주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 사업내용: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
			③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25) 92,729백만원(보조) · 시행주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 사업내용: 수출과정에 필요한 생산 및 물류비용, 해외 인증 취득 등을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 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실태조사(안 제6조)

- 한돈산업 실태조사 비용은 유사사례인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
 -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는 「말산업 육성법」 제6조²⁾ 및 하위법령에 따라 농

1)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말산업 육성법」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말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에서 수행 중

-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주기: 매년
- 예산: 4억 5,000만원('22~'25년 매년)
- 조사대상 및 수록내용: 말자원 조사, 말사업 사업체 실태조사, 산업연관분석 등
- 한돈산업 실태조사 비용은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추계기간 동안 한돈산업 실태조사 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한돈산업 실태조사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2억 5,000만원으로 추계

[표 2] 한돈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한돈산업 실태조사	450	450	450	450	450	2,250

주: 유사 실태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방식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안 제8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규정
- 본 추계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중 민간위원 수는 17명(85%)으로 가정
 - 제정안의 위원 구성 요건³⁾을 고려하여 안배한 것임

승마시설 및 승마안전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3) 안 제8조(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으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⁴⁾을 고려하여 한돈수급조절, 한돈기술개발, 한돈수출지원 등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민간위원 수는 본위원회와 동일하게 총 인원의 약 85% 규모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단위: 명)

구분		주요 기능 (안 제8조제2항)	총 인원	민간위원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본위원회 1개)		아래 1~8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20	17
분과 위원회 (3개)	한돈수급조절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한돈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7. 한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6
	한돈기술개발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한돈의 품질 고급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한돈산업 인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 품질향상 및 사료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7	6
	한돈수출지원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한돈의 유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6	5

주: 민간위원 수는 총 인원의 약 85%로 가정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사)대한한돈협회가 추천하는 자
3. 한돈 관련 학계 전문가
4.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한돈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
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6. 소비자 단체 대표
7. 한우농가 대표
8. 한돈 관련 수출·입 업체 대표
9. 한돈 유통관련 전문가
10. 그 밖에 한돈산업발전을 위하여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

4) 안 제8조(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한돈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한돈의 품질 고급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한돈산업 인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 품질향상 및 사료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한돈의 유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7. 한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
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⁵⁾
- 회의개최 횟수는 최근(2022~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물수급조절
협의회’⁶⁾ 회의 개최 현황을 참고하여 본위원회는 연 1회, 분과위원회(3개)
는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회의개최 현황: 2022~2025년 기준

(단위: 회)

구 분	2022	2023	2024	2025	합계	평균
본회의 개최횟수	1	—	—	—	1	0.25
분과위원회 개최횟수 (한육우, 양돈, 육계, 오리 등 약 4개)	7	1	—	2	10	2.5

주: 회의 횟수는 출석회의 및 서면회의를 합산한 것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추계 결과,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7
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억원으로 추계됨

[표 5]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만원/명·회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본위원회	민간위원 수(A)	17	17	17	17	17	—
	회의개최 횟수(B)	1	1	1	1	1	—
	사례금 단가(C)	30	30	30	30	30	—
	소계 (D=A×B×C)	5	5	5	5	5	25
분과위원회(3개)	3개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수(E)	17	17	17	17	17	—
	회의개최 횟수(F)	3	3	3	3	3	—
	사례금 단가(G)	30	30	30	30	30	—
	소계 (H=E×F×G)	15	15	15	15	15	75
합계(I=D+H)		20	20	20	20	20	100

주: 제정안 및 유사 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따
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5)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 6) 「축산법」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
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
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 한돈 부산물의 활용(안 제18조제1항)

- 한돈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 축산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 추진 중
 - 2025년도 예산에 7개 연구과제에 대해 3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개 과제당 평균 사업비는 5억 3,700만원 규모

[표 6]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예산 및 연구과제 수
(단위: 백만원, 개, 백만원/개)

사업명	2025년도 예산 (A)	연구과제 수 (B)	1개 과제당 연구개발비용 (C=A/B)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 기술개발(R&D) 사업 ⁷⁾	3,762	7 (가축 생산효율성 증진: 1개 과제, 축산시설 환경개선: 6개 과제)	53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를 바탕으로 한돈 부산물의 식용 또는 사료 등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은 매년 5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연구개발 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한돈 부산물 연구개발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6억 8,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한돈 부산물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한돈 부산물 연구개발	537	537	537	537	537	2,685

주: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연구개발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 실시 방법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80-388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한돈(축산) 농가 관련 지원 사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한돈(축산) 농가 관련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본예산				법적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22	'23	'24	'25			
경영개선	피해보전직불	20,000	18,000	5,400	21,866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	피해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	FTA로 피해를 본 농가피해 보전(최대 35백만원)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축산경영자금)	23,627	20,111	22,510	21,200	축산법 제47조 (기금의 용도)	소규모 축산농가(한우 50마리 미만), 경종 농가 등	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 (최대 10백만원)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업경영회생자금)	1,255	1,830	1,826	2,534	농어민부채경감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농·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및 연체 채무
	농업자금이차보전 (긴급경영안정자금)	288	667	735	656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로 영업을 중단한 농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반운영자금
탄소저감	저탄소농림축산 식품기반구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1,300	1,581	2,632	3,583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42,582	37,718	36,081	38,371	가축분뇨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축산농가, 농업법인, 가축분뇨처리업체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융자)	49,906	39,130	32,865	33,924	축산농가, 농업법인, 가축분뇨처리업체 등	축산농가 대상 융자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본예산				법적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22	'23	'24	'25			
수급조절	축산자조금 (한돈자조금)	5,350	5,350	5,350	5,350	축산자조금법 제6조 (의무자조금의 재원)	돼지 사육 농가 및 소비자	농가 자율적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거 출금에 보조금을 매칭하여 지원
	농업관측	16,741	16,931	17,022	18,68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 림업관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 센터)	농업관측을 위한 운영비 및 운영비 지원
교육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축산관련종사자교육)	3,190	3,190	3,190	2,711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으려는 자 등	교육비용 지원
한돈농가지 원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시설 개선 등)	168,783	148,525	139,643	133,517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 력 향상을 위한 지원)	중소규모 농업인 등, 가축사육 농가, 축산농가	축사 신축·개보수, 시설·장비 비용, 방역시설, ICT 장비 등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359,647	401,754	348,396	344,398	농어촌복지법 제27조, 제33조/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3조, 제43조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 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 에 종사하는 자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일부 지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57,664	62,066	62,645	62,777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제4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	만 15~87세 농업인	보험료 일부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	62,413	63,817	64,837	65,79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지자체, 농축협	방역본부 및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가축방역지원 (방역대응, 사체처리, 예방약 등)	171,584	159,149	164,627	172,3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3조, 제13조	지자체, 대한수의사회, 농협, 지자체, 검역본부 등	긴급방역비, 예방약품, 소독자원 등 지원,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장비, 구제역 예방약, 가축방역 사업추진 운영비 지원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본예산				법적근거	지원대상	지원내용
		'22	'23	'24	'25			
품질·유통	가축개량지원 (국가·지역 종축개량지원 / 돼지)	1,814	1,744	1,702	1,779	축산법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농협, 가축개량원 등 시도, 지역축협	종돈장 간 개량네트워크 구축, 지역 단위 우수 유전자원 확보·보급 등
	축산물품질관리	58,511	60,478	62,511	61,493	축산물 이력법 제31조(비용의지원등)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자체 등	축산물이력제, 등급관정 등
	축산물위생안전 검사운영	20,703	20,893	20,103	20,59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 조(보조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지자체 등	도축검사원 및 축산물 위생증양감 시반 운영
	공익기능증진직불 (친환경축산직불)	1,585	1,585	1,585	4,085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 지불금의 지급)	HACCP인증을 받은 자 중 친 환경축산물 인증(유기)을 받은 농업인	직접지불금 지급
	국가인증농식품지원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운영)	5,130	4,618	4,618	4,518	농수산물품질법 제110조(자금지원)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 등	GAP 인증을 위한 안전성분석 및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경매플랫폼, 우수브랜드 육성	1,500	1,560	1,310 *브랜드 사업 종료	1,100	축산법 제47조 (기금의 용도)	도매시장, 브랜드	우수 브랜드 인증·지원, 온라인으 로 경매 가능한 시스템 구축·운영
	농산물원산지관리 (원산지 및 이력관리)	17,790	17,933	18,115	17,307	원산지표시법 제5조 (원산지 표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장(수출입의 검역)	직접집행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접집행 (검역본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비용 지원 수출 희망품목 수요조사 실시, 해외 수출작업장 점검 및 수출 협상 등
수출기반 조성	동축산물검역검사	13,807	12,774	14,898	17,570	농업식품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 의 수출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농축산물 수출 농가 및 기업	해외 시장정보 조사, 해외식품인증 지원센터 및 온라인 마케팅, 수출농 가 안정성 검사, 수입국 검역관 현 지조사지원 등
	농식품시장개척 등*	144,944	147,150	159,308	158,732			

*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농식품해외시장진출, 농식품시장개척,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세부사업의 예산액 합계

[참고자료 2] 주요 축종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도축장려금: 2022년 추석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

- 재원: 국비 100%
- 지원대상: (한우) 암소, (돼지) 전체 도축마릿수
- 지원내용: 추석 성수기(8.22.~9.8.)에 도축한 한우 암소 및 돼지에 도축수수료의 일부 지원
- 지원단가: 한우 103,000원, 돼지 10,300원
- * 지원단가에 위탁수수료(3%) 포함

<'22년 추석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 내역>

구분	지원규모 (A, 천마리)	지원단가* (B, 원/마리)	지급액 (A×B, 백만원)
한우 암소	22	103,000	2,262
돼지	936	10,300	9,642
합계	958	—	11,903

* 지원단가에 위탁수수료(3%) 포함

□ 출하장려금: 한우 암소 비육지원('21~)

- 재원: 한우자조금(국비 포함), 농협 자체자금
- 지원대상: 일정 조건을 충족한 미경산우 및 경산우
- 지원내용: 일정 기한 내에 한우 암소를 비육하여 도축하면 지원금 및 보증썬수소 정액 지원(미경산우 20만원, 경산우 18만원(자조금 15+농협 3))

<한우 암소 비육지원 내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만)>

구분	지원규모 (A, 천 마리)	지원단가 (B, 원/마리)	지급액 (A×B, 백만원)
미경산우	15	200,000	3,000
경산우	20	180,000	3,600
합계	35	—	6,600

[참고자료 3] 주요 축종별 도축수수료 현황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출자료)

□ 최근 4년간 평균 도축수수료(도살처리수수료)

○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으나, '24년 조사 결과 미발표

(단위: 원/마리)

축종	구분		도매시장	농협공판장	민영도축장
소(한우)	2021년	암	139,201	138,421	162,874
		수	139,201	138,421	161,926
		거세	139,201	138,421	162,222
		평균	139,201	138,421	162,341
	2022년	암	161,620	154,667	170,070
		수	157,620	149,600	166,223
		거세	157,620	151,333	168,227
		평균	158,953	151,867	168,173
	2023년	암	159,050	152,185	168,386
		수	159,050	148,783	168,234
		거세	159,050	152,185	168,933
		평균	159,050	151,051	168,518
	2024년	암	-		
		수			
		거세			
		평균			
돼지	2021년	평균	18,584	20,434	17,630
	2022년	평균	19,225	19,562	19,057
	2023년	평균	22,900	19,956	19,055
	2024년	평균	-		
			계열업체		
닭(육계, 도계비)	2021년	평균	308		
	2022년	평균	304		
	2023년	평균	326		
	2024년	평균	-		

주: 닭은 계열업체 운영 도계장을 기준으로 도계비 산출

[참고자료 4] 농림축산식품부 돼지 도축·출하장려금 비용추계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도축·출하장려금: 12,092백만원 = 1,174천마리 × 10,300원/마리

* '22년 시행한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의 기간 및 단가를 준용하여 산출

추종	추계	추계 근거
지원규모	1,174천마리	• '22년 추석 성수기 한시적으로 시행한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지원 기간 및 물량 설정 • 1,174천 마리: 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 최근 5년('20~'24) 추석 전 3주간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
지원 단가	10,300원/마리	• '22년 추석 성수기 한시적으로 시행한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지원 단가 설정 • 돼지 출하단계에서의 유통비용*(3.5만원) 중 1만원 지원 * 유통비용 35천원: 상장수수료(8.0), 도축수수료(20.5), 생축운송비(4.3), 자조금 등(2.2) * 사업수행기관(농협 등) 위탁수수료 (거래비용의 3%) 포함
소요비용	12,092백만원	• 1,174천마리 × 10,300원/마리

[참고자료 5] 국내 양돈 산업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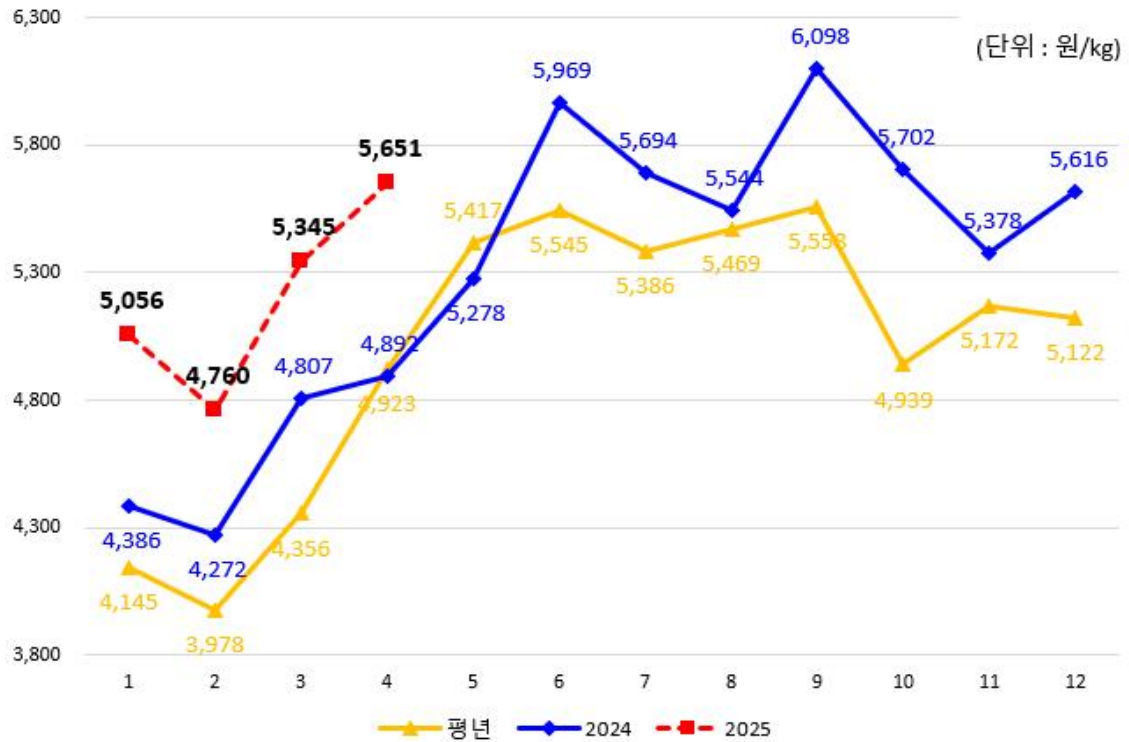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연 도		단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생 산 액		억원	69,671	67,565	73,380	71,185	63,924	72,193	84,785	96,496	91,127	—
생 산	사육두수	천두	10,187	10,367	11,273	11,333	11,280	11,078	11,217	11,124	11,089	10,846
	모돈수	천두	958	974	1,058	1,063	1,026	1,001	1,023	995	993	974
	사육농가수	천호	4.9	4.6	3.9	3.6	3.2	3.0	3.2	3.0	3.0	2.8
	사육농장수	천호	6.9	6.7	6.3	6.2	6.1	6.1	5.9	5.7	5.6	5.5
	농장당사육두수 (‘16년까지 농가당 사육두수)	두	2,075	2,266	1,786	1,831	1,839	1,823	1,888	1,953	1,968	1,967
공 급	도축마리수 (등급판정 기준)	천두	15,884	16,524	16,713	17,350	17,812	18,307	18,366	18,544	18,754	19,015
	출하체중	kg	114	114	115	116	117	116	116	116	116	115
	생산량(A)	천톤	945.5	986.4	997.8	1,035.8	1,066.6	1,097.8	1,097.4	1,107.4	1,118.2	1,131.9
	수입량(B)	천톤	357.9	318.5	369.2	463.5	421.3	310.5	332.8	442.4	402.9	452.5
소 비	소비량(A+B)	천톤	1,199.9	1,209.6	1,262.9	1,399.2	1,390.2	1,407.5	1,430.5	1,549.8	1,521.1	1,584.4
	1인당 소비량	kg	22.8	24.1	24.5	27.0	26.8	27.1	27.6	30.1	29.6	30.9
	자급률	%	70.2	73.7	70.8	66.9	69.7	77.9	76.7	71.5	73.5	71.4
	수출량	천톤	2.2	2.1	1.5	0.9	1.3	4.4	7.7	7.1	8.5	10.3
가 격 및 수 익	탕박가격(kg) (제주 제외)	원	4,585	4,303	4,640	4,296	3,779	4,185	4,722	5,227	5,134	5,239
	생산비(100kg)	천원	270	267	284	284	284	276	298	346	370	366
	생산비 (지육 kg)	원	3,514	3,478	3,698	3,708	3,698	3,548	3,829	4,438	4,754	4,696
	경영비(100kg)	천원	258	255	272	272	270	263	285	329	348	338
	소득(마리)	천원	111	94	99	63	22	63	83	75	48	64
	순수익(마리)	천원	97	82	86	48	6	47	68	57	23	32

[참고자료 6] 국내산 돼지고기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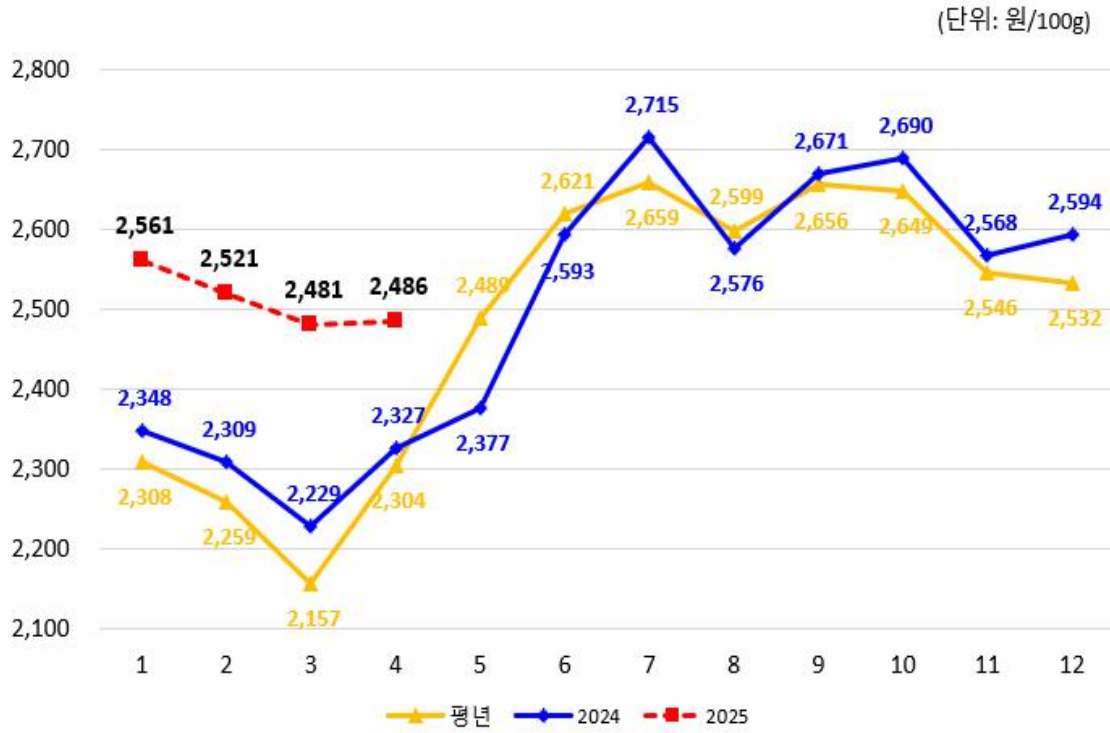
□ 돼지고기 도매가격(원/지육kg, 내륙평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평년	4,145	3,978	4,356	4,923	5,417	5,545	5,386	5,469	5,558	4,939	5,172	5,122	5,001
‘23년	4,756	4,326	4,712	5,275	5,858	5,571	5,407	5,499	5,705	4,947	5,002	4,890	5,134
‘24년	4,386	4,272	4,807	4,892	5,278	5,969	5,694	5,544	6,098	5,702	5,378	5,616	5,239
‘25년	5,056	4,760	5,345	5,651	-	-	-	-	-	-	-	-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원/100g, 냉장삼겹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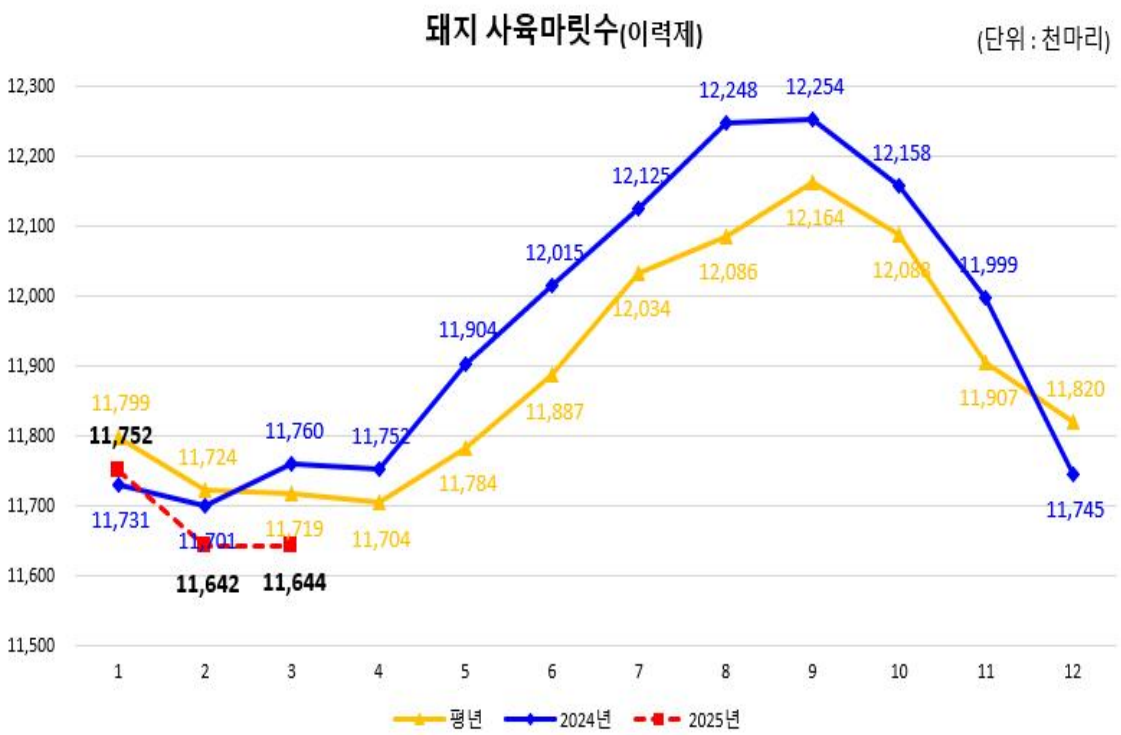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평년	2,308	2,259	2,157	2,304	2,489	2,621	2,659	2,599	2,656	2,649	2,546	2,532	2,482
'23년	2,465	2,393	2,199	2,351	2,639	2,726	2,662	2,615	2,662	2,672	2,547	2,473	2,534
'24년	2,348	2,309	2,229	2,327	2,377	2,593	2,715	2,576	2,671	2,690	2,568	2,594	2,500
'25년	2,561	2,521	2,481	2,486	-	-	-	-	-	-	-	-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22.3.), 축산물품질평가원('22.4∼)

[참고자료 7] 돼지 사육 및 도축 마릿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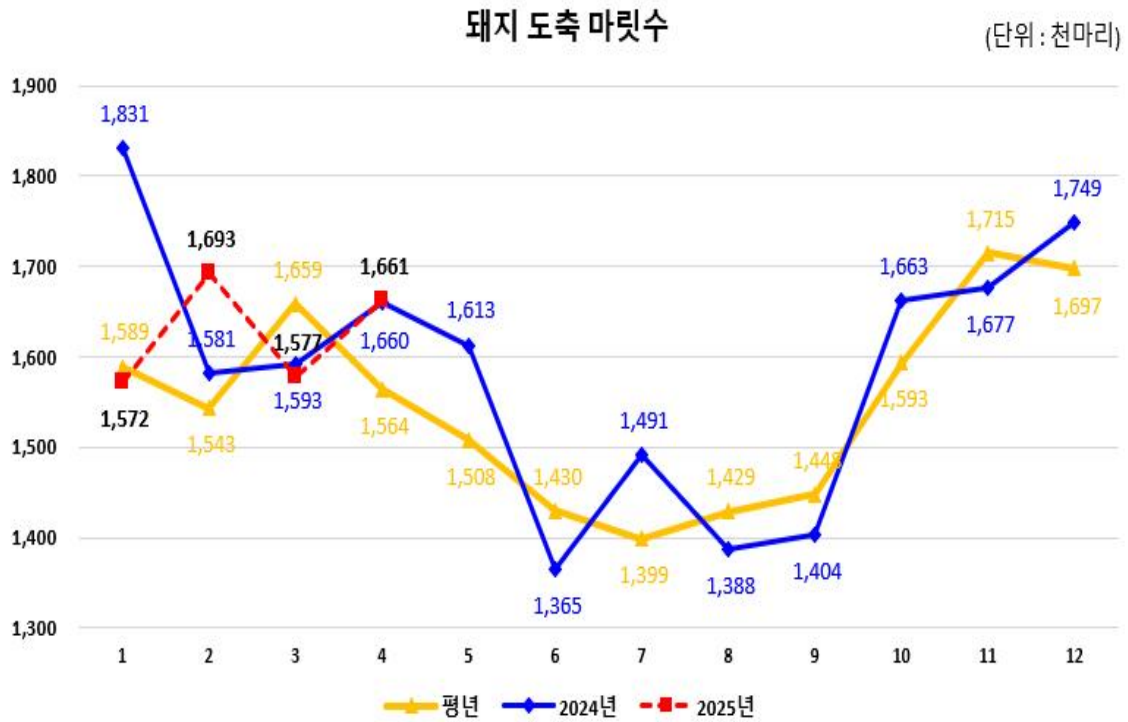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육 마릿수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축 마릿수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